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6. 1. 22. 진선미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6. 1. 23.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24.)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2.)

상정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

상정 · 제안설명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진선미의원)

최근 대학 등록금과 주거비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대학생은 경제

적 부담과 주거 불안정을 동시에 겪고 있으며, 이는 안정적인 학업 환경 조성에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학생이 직면한 주거 문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생 맞춤형 주거지원 정책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4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최선영)

개정안에 따라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대학생의 주거 관련 현황을 보다 포괄적으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초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을 이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조사 주기 등을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주거실태조사의 예측가능성과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사 주기를 법률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교육통계조사의 조항을 준용하고 있으나 학생의 실제 주거 상황과 요구 등을 파악하기 위한 주거실태조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준용이 필요한 조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고민정)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